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83,044,499	29,491,335
일반회계	817,854,110	24,535,623
특별회계	165, 190, 389	4,955,712
공기업특별회계	39,276,939	1,178,30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276,939	1,178,308
기타특별회계	125,913,450	3,777,40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014,383	390,431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24,691,130	740,73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132,905	153,987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410,114	42,303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022	91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55,142,331	1,654,270
주택사업특별회계	2,357,089	70,7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38,511	37, 155
경영사업특별회계	346,060	10,382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290,758	8,723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12,922,720	387,682
주차장특별회계	8,156,805	244,704
기반시설특별회계	1,207,622	36,229

-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038,502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2011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1,3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 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